

스티로폼 포장, 조만간 사라진다!

환경부, 재활용 안되는 PVC 사용규제 ... 재질대체와 단계적 감축

환경 호르몬 용출 논란과 폐기물 문제를 낳고 있는 스티로폼(Expanded Poly Styrene) 컵라면 용기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용기 재질이 단계적으로 종이류로 바뀐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03년부터 제조기업별로 총 생산량의 20%를 종이나 펄프물드 등 환경친화적 재질로 대체토록 했다.

2005년부터는 생산량의 30% 이상, 2007년부터는 3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재질로 대체토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조기업에 부과한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국내 컵라면 생산량 9억2000만개 가운데 1억8000만개가 종이 등 친환경적 재질의 용기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합성수지로 된 달걀 포장과 사과, 배 등의 농수산물 받침접시도 단계적으로 재질을 대체키로 했으며, 위반 시 닭 사육 농가와 유통매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PVC 달걀 포장은 2003년부터 60% 이상, 2005년부터는 70% 이상, 2007년부터는 80% 이상을 종이나 펄프물드로 대체해야 하며, 김밥류, 샌드위치류 포장재에 대해서도 PVC 사용이 금지된다.

또 사과, 배 등의 받침접시는 2003년 15%에서 시작해 2007년 25% 이상, 기타 농축수산물 받침접시는 2003년 10%에서 2007년 25%까지 환경친화적 재질로 바꾸어야 한다.

전기용품 중 포장용적 2만cm³ 이하 제품은 2004년부터, 3만cm³ 이하 제품은 2006년부터, 4만cm³ 이하의 제품은 2008년 이후부터 EPS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006년에는 국내 시판 및 수입되는 전기용품 6305만1000대 중 2284만5000대에 해당하는 36.2%에 대해 EPS 포장용 완충재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대포장 규제대상 품목은 종전 식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의약부외품, 의류, 종합제품 등 6개 제품, 21개 품목에서 세제류 등을 추가해 7개 제품, 2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재활용이 용이한 환경친화적인 재질로의 대체를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합성수지, PVC, 합성섬유 재질로 된 받침접시, 완충재를 사용할 때는 포장공간 비율을 5% 축소하는 한편, 펄프물드 등 환경친화적인 종이재질을 사용하면 포장공간 비율을 5%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16>